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선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「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공포(10.24)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때 마련하고,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(200만원) 세부 부과기준(별표2)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근거 조항 정비(안 제53조)

- 1) 법 제179조제1항이 신설(과태료 1천만원)되어 시행령 위임 근거인 법 제179조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 정비
 - (당초) 법 제179조제4항 → (개정) 법 제179조제5항

나. 선내 괴롭힘의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안 별표2 제2호차목~하목)

- 1) 법 제25조의3 위반 시 (상한액 1천만원, 법 제179조제1항)
 - (선박소유자) ① 한 사람을 수차례 괴롭히거나 2명 이상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설정, ②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 설정, 2차 위반시 부터는 모두 1,000만원 적용
 - (친족인 근로자) 1차 위반 시 300만원(1천만원의 30% 이상)으로 설정
- 2) 법 제25조의4 위반 시 (상한액 500만원, 법 제179조제2항제3의2호)
 - 선내 괴롭힘 발생 후 조치에 관한 사항(조사 미 실시, 조치 미 이행, 비밀 누설 등)에 대한 기준 마련
 - * 1회 위반 200~300만원 → 2회 위반 300~500만원 → 3회 위반 500만원

다.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안 별표2 제2호러목)

1)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해 1회 위반 시부터 100%(200만원) 설정

라.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른 각 목 정비(안 별표 2)

1) 일반기준과 부과기준의 자구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 중 “**법 제179조제4항**”을 “**법 제179조제5항**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호	100	150	200
다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호	250	375	500

라.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2호	250	375	500
마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호	250	375	500
바.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호	60	120	200
사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3호	60	120	200
아.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4호	100	150	200
자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5호	60	120	200
차. 법 제25조의3를 위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1) 선박소유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선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2) 선박소유자가 그 밖의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3)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1항	500 300 300	1000 1000 500	1000 1000 1000
카. 법 제2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300	500	500
타.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200	300	500
파. 법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200	300	500
하. 법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300	500	500
거.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 제5호의2	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	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
너.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·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6호	60	120	200
더.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6호	60	120	200
러.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여권 등을 대리보관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6의3	200	200	200
머.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4항제1호	30	60	100
버.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,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7호	60	120	200
서.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4호	250	375	500
어.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급식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9호	60	120	200
저.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 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0호	100	150	200
쳐.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1호	100	150	200
커.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5호	250	375	500
터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4항제2호	30	60	100
퍼.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2호	100	150	200
허.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 제12호의2	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	150만원 한도 에서 통지하 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도 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
고.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60	120	200
노.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100	150	200
도.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3호	100	150	200
로.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4호	100	150	200
모.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,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5호	100	150	200
보.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6호	250	375	500
소.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6호	100	150	200
오. 법 제151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100	150	200

신 · 구조문 대비표(안 제53조)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</u> <u>179조제4항</u> 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제5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</u> <u>179조제5항</u> ----- -----.

마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3호	250	375	500
바.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호	60	120	200
사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호	60	120	200
아.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4호	100	150	200
자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5호	60	120	200
차.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 제5호의2	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	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카.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·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6호	60	120	200
타.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6호	60	120	200
파.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호	30	60	100
하.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,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7호	60	120	200

마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호	250	375	500
바.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호	60	120	200
사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3호	60	120	200
아.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4호	100	150	200
자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5호	60	120	200
차. 법 제25조의3를 위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선내 괴롭힘을 1) 선박소유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선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2) 선박소유자가 그 밖의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3) 선박소유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1항	500 300 300	1000 1000 500	1000 1000 1000
카. 법 제2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300	500	500
타.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200	300	500
파. 법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200	300	500
하. 법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3의2	300	500	500

거.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4호	250	375	500
너.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9호	60	120	200
더.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0호	100	150	200
러.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1호	100	150	200
머.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5호	250	375	500
버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30	60	100
서.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2호	100	150	200
어.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 제12호의2	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	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저.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2호	60	120	200
쳐.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2호	100	150	200

거.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 제5호의2	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	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너.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·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6호	60	120	200
더.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6호	60	120	200
러.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여권 등을 대리보관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6의3	200	200	200
머.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4항제1호	30	60	100
버.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,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7호	60	120	200
서.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4호	250	375	500
어.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9호	60	120	200
저.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0호	100	150	200

커.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 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3 호	100	150	200
터.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4 호	100	150	200
퍼.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 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·기피· 방해한 경우, 장부나 서류의 제 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5 호	100	150	200
허.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79조 제1항제6호	250	375	500
코.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16 호	100	150	200
노. 법 제151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2호	100	150	200

처.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1 호	100	150	200
커.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 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5호	250	375	500
터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3 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않 은 경우	법 제179조 제4항제2호	30	60	100
퍼.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 강진단서를 갖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2 호	100	150	200
허.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 제12호의2	100만원 한 도에서 통 지하지 않은 선 박 1척당 1만원	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	200만원 한 도에서 통 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
코.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60	120	200
노.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100	150	200
도.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 용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3 호	100	150	200
로.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4 호	100	150	200
모.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 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·기피· 방해한 경우, 장부나 서류의 제 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	법 제179조 제3항제15 호	100	150	200

	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				
	보.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79조 제2항제6호	250	375	500
	소.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16 호	100	150	200
	오. 법 제151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179조 제3항제2호	100	150	2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743